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19일, 김동아의원 등 13인

나. 회 부 일 자: 2024년 3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9.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9.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9.25.) 상정, 소위심사 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동아의원)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대상기관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과 달리 현행법은 당사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필요한 후속 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 진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 절차 개선

개정안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① 법원이 당사자의 상대방에게 자료제출 명령을 하였음에도 그 자료의 소지자가 정당한 이유를 주장하여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②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료제출명령제도의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표 1]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3(자료의 제출) (생 략) <신 설>	제22조의3(자료의 제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현행법 제22조의3[1]에서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이하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자료의 제출) 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단서에서는 자료의 소지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22조의3(자료의 제출)는 침해소송에서 당사자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의 증거가 되는 자료를 당사자의 상대방으로부터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료의 소지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자료 제출 거부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후속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료 제출 거부에 따른 재판 지연 등으로 신속한 피해 구제가 제한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침해소송에서 자료의 소지자가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정당한 이유로 거부할 경우 ① 그 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자료가 영업비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하는

한편, ③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후속 절차를 규정함.

이와 관련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특허법」[2]을 살펴보면, 자료의 소지자가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후속 절차를 개정안과 유사[3]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인정보 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이 거부될 경우를 대비한

---

2) **「특허법」 제132조(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특허법」** 제132조제3항에서는 제출되어야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경우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안**은 이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영업비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서 「특허법」과 차이가 있음.

후속 절차를 개정안의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은 법원의 신속한 증거자료 확보와 피해자의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법률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2] 자료제출명령제도 관련 입법례

법률	관련 조문 및 주요내용	비고
특허법	제132조(자료의 제출) 1.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침해 및 손해액 입증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 2. 재판부의 비밀심리로 제출의무 판단 3. 침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는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의무 부과 및 열람제한 4. 자료제출명령 불응시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6조의2(자료제출명령) 1.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피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 2. 재판부의 비밀심리로 제출의무 판단 3. 피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는 당사자의 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제출의무 부과 및 열람제한 4. 자료제출명령 불응시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자료의 제출) 1.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 2. 재판부의 비밀심리로 제출의무 판단 3.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는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의무 부과 및 열람제한	

법률	관련 조문 및 주요내용	비고
	4. 자료제출명령 불응시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자료제출명령) 1.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 2. 재판부의 비밀심리로 제출의무 판단 3. 위반행위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는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의무 부과 및 열람제한 4. 자료제출명령 불응, 고의적 자료 훼손시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1조(자료의 제출) 1.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 2. 재판부의 비밀심리로 제출의무 판단 3.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는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의무 부과 및 열람제한 4. 자료제출명령 불응시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한편, 현행법 제22조의4[4]에서는 침해소송에서 “산업기술”을 소송 외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산업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산업기술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산업기술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산업기술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산업기술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산업기술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산업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산업기술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경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등이 아닌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법원이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유지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산업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로 함께 도입된 것으로 보임.

앞서 살펴본 「특허법」, 「개인정보 보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자료 소지자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서로 상충되는 법적 지향점이 균형을 이룰수 있도록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제도를 함께 도입하고 있으며, 그 적용 대상을 "영업비밀"로 동일하게 명시하여 두 제도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개정안에서 제22조의3제3항[5]을 신설하면서 자료제출명령의 대상을 "산업기술"이 아닌 "영업비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비밀유지명령과 그 대상이 불일치하게 되는 문제

---

② ~ ⑤ (생 략)

5) **안 제22조의3(자료의 제출)**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u>**영업비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가 발생하였음.

[표 3] 개정안과 자료제출 및 비밀유지명령 대상 관련 입법례의 비교

법률	자료제출명령 대상	비밀유지명령 대상
개정안	영업비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제22조의3(자료의 제출)	산업기술 ※안제22조의4(비밀유지명령)
특허법	영업비밀 ※제132조(자료의 제출)	영업비밀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개인정보 보호법	영업비밀 ※제39조의3(자료의 제출)	영업비밀 ※제39조의4(비밀유지명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 ※제111조(자료의 제출)	영업비밀 ※제112조(비밀유지명령)

이와 같이 제도 도입의 취지와 타 입법례를 고려할 때, 개정안 제22조의3제3항이 신설될 경우 현행법 제22조의4의 비밀유지명령제도도 이에 맞추어 개정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안 제22조의3제3항(자료의 제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제출명령 대상인 '영업비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현행법 제22조의4(비밀유지명령)에 따른 비밀유지명령 대상인 '산업기술'을 동일한 문구로 수정[6]하는 것이 법 체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해 보임.

6)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법상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이 "산업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안 제22조의3제3항 중 "영업비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로 명시하고, 이에 맞춰 제22조의4의 비밀유지명령 대상도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로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7. 기타 사항

없 음.